

상공자원부 고시(제1994-137호)

국내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고시중개정

석유사업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에 관한 고시(상공자원부고시 제1994-115호)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1994. 11. 1
상공자원부 장관

제1조의 제①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국내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①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다.

1. 가격연동 석유제품 및 적용가격

○ 가격연동석유제품은 아래에서 지정한 석유제품을 말하며, 이의 제조장 반출가격은 제2호에서 규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결정되는 가격을 그 최고판매가격으로 한다. 단, 석유정제업자간 거래 및 한국전력공사에 발전용으로 공급하는 B-C유에 대하여는 이 고시에 따른 석유류제품 최고판매가격 적용을 배제한다.

가격연동석유제품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경유(0.2W%), 경유, 저유황경질중유(1.0W%),
저유황경질중유(1.6W%), 경질중유, 저유황중유(1.0W%), 저유황중유(1.6W%), 중유,
저유황B-C유(1.0W%), 저유황B-C유(1.6W%), B-C유

2. 가격연동방법

○ 가격연동 석유제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결정하며, 매월 1일 0시부터 매월 말일 24시까지 적용된다.

가.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 경유(0.2W%), 경유, 저유황 B-C유(1.0W%), 저유황 B-C유(1.6W%), B-C유의 제조장 반출가격의 최고액 결정 산식

1)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

$$= \text{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 \text{특별소비세액(휘발유, 저유황 경유(0.2W%), 경유는 교통세액)} + \text{석유사업기금} + \text{부가가치세액}$$

2)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

$$= (\text{유종별 기준국제가격}(P) + \text{운임}(F) + \text{보험료} + \text{관세} + \text{석유사업기금} + \text{부대비} + \text{수입금융비} + \text{품질보정치}(Q) \times \text{환율} + \text{환차손익} + \text{수송중손실} + \text{국내수송} \cdot \text{저유} \cdot \text{비축} \text{ 등 국내공급비용})$$

$$= \{(1.017245 + 1.004548 \times \text{관세율}) (P+F) + 1.003814 \times \text{석유사업기금} + 1.003814 \times Q\} \times \text{환율} + 109.415780P \times (\text{직전 3개월간 환차}) \div (\text{직전 3개월간 일수}) + \text{국내수송} \cdot \text{저유} \cdot \text{비축} \text{ 등 국내공급비용}$$

주 : 1)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 반출가격은 원/ℓ로 표시하며,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 경유(0.2W%) 및 경유는 소숫점 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고, 기타 유종은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2) 유종별 세전 제조장 반출가격의 경우, 무연휘발유, 등유, 저유황 경유(0.2W%), 및 경유는 주¹⁾에 의해 결정된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반출 가격에서 특별소비세액(무연 휘발유, 저유황 경유(0.2W%), 경유는 교통세액), 석유사업기금, 부가가치세액을 역산하여 차감한 가격으로 하며, 저유황 B-C유(1.0W%), 저유황 B-C유(1.6W%) 및 B-C유는 가의 산식²⁾에 의해 결정된 가격을 적용한다. (원/ℓ로 표시하되 환산계수는 1배 렐당 158.984 ℓ로 하고,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3) 유종별 세포함 제조장반출가격 산정시의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석유제품 판매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으로 당월 1일 유효한 수입금 단가를 적용하되, 당월중에 수입금 단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당일부터 변경된 수입금 단가를 적용한다. (원/ℓ로 표시하되 환산 계수는 1배 렐당 158.984 ℓ로 하고 소숫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4) 유종별 기준 국제가격은 다음과 같으며,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간 Platt's지에 게재된 가격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 (\$/Bbl로 표시, 소숫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유종	기준 국제가격
• 무연휘발유	Singapore Mogas 92 Unleaded(중간가격)
• 등유	Singapore Kero(중간가격)
• 저유황경유(0.2W%)	Singapore Gasoil L/P(중간가격)
• 경유	"
• 저유황B-C유(1.0W%)	Singapore HSFO 180 CST(중간가격)
• 저유황B-C유(1.6W%)	"
• B-C유	"

※ 싱가포르 HSFO 180 Cst의 부피환산계수는 1MT 당 6.5배럴로 한다.

- 5) 유종별 세전제조장반출가격 산정시 운임은 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간 *Platt's*지에 게재된 *C & F JAPAN* 가격과 싱가포르 *FOB*가격과의 차이를 평균한 값(\$/Bbl로 표시, 소수점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으로 하고, 품질보정치는 다음과 같이 한다.

유종	품질보정치 (\$/Bbl)
• 무연휘발유	0.00
• 등유	0.00
• 저유황경유(0.2W%)	0.38
• 경유	-0.81
• 저유황B-C유(1.0W%)	2.32
• 저유황B-C유(1.6W%)	1.43
• B-C유	-2.15

- 6) 관세율은 당월 1일 유효한 관세율을 적용하되, 당월중에 관세율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당일부터 변경된 관세율을 적용한다.
(백분율(%)로 표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7) 유종별 세전 제조장반출가격 산정시의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사업법 제17조의 3 제1항 제1호에 정한 석유수입시에 징수하는 수입금으로 당월 1일 유효한 수입금 단가를 적용하되, 당월중에 수입금 단가가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된 당일부터 변경된 수입금 단가를 적용한다. (\$/Bbl로 표시, 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8) 환율은 미국달러의 전신환매도율을 기준으로 전전월의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날짜 단순평균치를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수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9) 직전 3개월간의 환차는 전월 25일의 환율에서 전전전전월 25일의 환율을 뺀 값을 적용한다. (원/\$로 표시, 소수점 이하 세째 자리에서 반올림)
- 10) 직전 3개월간 일수는 전전전전월 26일부터 전월 25일까지의 날짜수를 말한다.
- 11) 국내 수송·저유·비축 등 국내공급비용은 기준국내공급비용에 보정요인을 더한 값으로 하되, 유종별 기준국내공급비용과 보정요인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유종별 기준 국내공급비용〉

(단위 : ₩/B)

유종	기준 국내공급비용
무연휘발유	6,656
등유	5,687
저유황경유(0.2W%)	3,694
경유	3,696
저유황B-C(1.0W%)	1,074
저유황B-C(1.6W%)	835
B-C유	1,088
평균	3,695

국제제품가격에 의한 유종별 기준가격

$$\begin{aligned}
 &= (\text{유종별 기준국제가격}(P) + \text{운임}(F) + \text{보험료} + \text{관세} + \text{석유사업기금} + \text{부대비} + \text{수입금융비} \\
 &\quad + \text{품질보정치}(Q)) \times \text{환율} + \text{환차손익} + \text{수송중손실} + \text{유종별 기준국내공급비용} \\
 &= \{(1.017245 + 1.004548 \times \text{관세율}) \times (P + F) + 1.003814 \times \text{석유사업기금} + 1.003814 \\
 &\quad \times Q\} \times \text{환율} + 109.415780P \times (\text{직전 3개월간 환차}) \div (\text{직전 3개월간 일수}) + \text{유종별 기준국} \\
 &\quad \text{내공급비용}
 \end{aligned}$$

* 유종별 기준국제가격, 운임, 관세율, 석유사업기금, 품질보정치, 환율, 직전 3개월간 환차, 직전 3개월간 일수는 동 고시에 준하되, 석유사업기금은 석유수입시 징수하는 수입금을 적용한다.

* 평균수익은 원/Bbl로 표시하되 소수점이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2) 단, 상공자원부장관은 국제제품가격 급등락으로 국내유가완충이 필요할 경우, 본 고시의 연동공식에 의한 가격결정 방식을 일시 중지시킬 수 있다.

- 부 칙 -

1. 이 고시는 1994년 11월 1일 0시부터 시행한다.
2. 다음에서 세전제조장 반출가격 보정금액을 지정하는 유종의 경우, 1994. 11. 10시부터 1994. 11. 30 24시까지 적용될 가격에 대하여는 이 고시 제1조 제1항의 2의 가. 주 2)에 의해 결정되는 유종별 세전제조장 반출가격에서 다음 보정금액을 차감하여 결정하고, 1994. 12. 1 0시부터 1994. 12. 31 24:00까지 적용될 가격에 대하여는 동 보정금액을 가산하여 결정한다. 단, 이에 의한 소비자가격 인상률이 전월대비 10%를 초과할 경우 소비

자가격 인상률이 10%가 되는 수준까지만 반영하고, 나머지 보정금액은 익월로 이월하며, 익월에서의 반영방법도 동일하다.

유 종	세전제조장 반출가격	보정금액
저유황 B - C 유 (1.0W%)	3.17원 / ℥	
저유황 B - C 유 (1.6W%)	3.76원 / ℥	
B - C 유	6.79원 / ℥	

상공자원부 고시(제1994-138호)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제품 판매시에 정수하는 수입금의 정수비율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11. 1

상공자원부 장관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석유제품판매시 정수하는 수입금의 정수비율 등에 관한 고시
제1조 (수입금의 정수대상) 석유제품 판매시 정수하는 수입금의 정수대상은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가 판매하는 등유로 한다.

제2조 (수입금의 정수금액)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의 정수금액은 판매등유 1 ℥ 당 10원으로 한다.

제3조 (수입금의 정수대상물량 및 산정기준) 판매등유에 대한 수입금의 정수시 정수대상물량 산정은 특별소비세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특별소비세가 과세되는 물량으로 한다.

제4조 (수입금의 납부시기) 제1조 내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석유정제업자와 석유수입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수입금의 납부시기는 석유사업법시행령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판매일은 특별소비세법 제4조에 의한 특별소비세 부과일로 본다.

- 부 칙 -

이 고시는 199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